

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(제17조제1항 관련)

1. 서류검사: 신청서 기재사항이 소금제조업 허가사항과 일치해야 한다.

2. 관능검사

소금의 성질·상태·맛·냄새·색깔 및 이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,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정밀검사

가. 공통사항: 표시중량 이상이어야 하며, 포장(무포장 소금은 제외한다)은 한국 산업표준(KS)에 적합하여야 한다.

나. 식용소금

1) 결정체소금

항목	천일염	재제조소금	태움·용융소금	정제소금	기타소금	가공소금	검사방법
염화나트륨(%)	70.0 이상	88.0 이상	88.0 이상	95.0 이상 (해양심층수염은 70.0 이상)	70.0 이상 (암염 및 호수염은 88.0 이상)	35.0 이상	「식품위생법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
수분(%)	15.0 이하	9.0 이하	4.0 이하	4.0 이하 (해양심층수염은 10.0 이하)	9.0 이하	5.5 이하	
불용분(%)	0.15 이하 [토관	0.02 이하	3.0 이하	0.02 이하	0.15 이하	-	

	염(土板鹽) 은 0.3 이하]						
비소 (mg/kg)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
납 (mg/kg)	2.0 이하	2.0 이하	2.0 이하	2.0 이하	2.0 이하	2.0 이하	
카드뮴 (mg/kg)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0.5 이하	
수은 (mg/kg)	0.1 이하	0.1 이하	0.1 이하	0.1 이하	0.1 이하	0.1 이하	
방사 능 (Bq/ kg, L)	¹³¹ I	100 이하	100 이하	100 이하	100 이하	100 이하	
	¹³⁴ Cs + ¹³⁷ Cs	100 이하	100 이하	100 이하	100 이하	100 이하	
페로시아 화이온 (g/kg)	불검 출	0.010 이하	0.010 이하	0.010 이하	0.010 이하	0.010 이하	

2) 함수

항목	규격	검사방법
염화나트륨(%)	5.0 이상	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 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
비중(baume)	섭씨 15도에서 5도 이상	
납(mg/L)	2.0 이하	
수은(mg/L)	0.1 이하	
카드뮴(mg/L)	0.5 이하	
비소(mg/L)	0.5 이하	
대장균	음성	

세균수(ml 당)	100 이하	
-----------	--------	--

다. 비식용소금 중 화학부산물소금

항목	규격	검사방법
염화나트륨(%)	95.0 이상	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과 규격에 따름
수분(%)	4.0 이하	
불용분(%)	0.02 이하	